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35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,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 법」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,

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「지속가능한 연 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(의안번호 제11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"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양식산업발전법」,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"으로 한다.

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112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 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------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 7. ------리법」,「어장관리법」,「양 식산업발전법 | 및 「연근해 식산업발전법 , 「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사항 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-----의 심의 ② 시 · 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 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·도수산 조정위원회가 시・군・구수산 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. 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관 8. -----리법」,「어장관리법」,「양 _____ 「야 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 <u>식산업발전법」,</u> 「연근해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| 에서 정하는 사항 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의 심의 연근해어업 발전법 . -----

- ③ ~ ⑤ (생 략)
- 축) ① (생 략)
 - 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 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 고하여야 한다.
 - ③ (생 략)
-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10. (생 략)
 - 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 - ⑤ (생략)

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 축) ① (현행과 같음)
 -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 │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 이스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 업 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 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 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 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 - <삭 제>
 - ⑤ (현행과 같음)